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7구합246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redacted]군수 |
| 변 론 종 결 | 2018. 6. 8. |
| 판 결 선 고 | 2018. 7. 4.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한 2017년 취득세 50,058,230원, 농어촌특별세 3,363,550원, 지방교육세 3,284,500원의 각 추징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가. 원고는 2013. 5. 14. [redacted]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에서 비금속광물 제품,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 피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한 C 전 1,312㎡, D 임야 2,519㎡, E 묘지 3,20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2,088.69㎡, 연면적 2,275.76㎡ 규모의 공장(일반철골구조)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경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C 지상 주건축물 제1동 건물 1875.76㎡와 같은 지상 주건축물 제2동 건물 39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준공하고, 2015.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합계 1,22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2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880,000원 및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합계 1,305,614,3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30,557,1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7,311,430원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여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마. 원고는 2017. 9. 28. 주식회사 [redacted]인[redacte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대금 총 2,317,636,000원에 처분하였다.

바. 그리고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취득가액 합계인 1,681,783,033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58,230원, 농어촌특별세 3,363,550원, 지방교육세 3,284,500원을 신고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는 2017. 10. 25. 피고에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그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50,058,230원, 농어촌특별세 3,365,550원, 지방교육세 3,284,500원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C 전 1,312㎡, D 임야 2,522㎡, E 묘지 6,432㎡, F 전 344㎡, G 전 3,114㎡, H 전 1,613㎡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이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위 취득세를 환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여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게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제때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redacted]도지사에게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redacted]도지사로부터 이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5. 3. 5. 비로소 피고로부터 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 측의 잘못된 법률 해석과 행정처리 지연,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협박 등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여기에 공장을 신축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향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제때 공장 설립을 추진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행정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자금사정과 수익상의 문제(거래처에 대한 납기 불이행, 금융비용의 증가)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부득이하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제조시설인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장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11. I으로부터 C 전 1,312㎡, D 임야 2,522㎡[1], 

1) D 임야 2,522㎡는 그 이후 D 임야 2,519㎡와 J 임야 3㎡로 분할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E 묘지 6,432㎡[2], F 전 344㎡, G 전 3,114㎡, H 전 1,613㎡를 매수·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을 총 매매대금 33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8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000원, 지방교육세 1,32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당초 경정청구'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1. 원고에게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같은 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9. [redacted]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redacted]도지사는 2015. 2.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28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000원, 지방교육세 1,32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창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증에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을 추

2) E 묘지 6,432㎡는 그 이후 E 묘지 3,205㎡, K 묘지 283㎡, L 묘지 2,751㎡, M 묘지 11㎡, N 묘지 182㎡로 차례대로 분할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3. 5. 14. 비금속광물제품,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때부터 현재(2014년)까지 원고의 법인장부(매입·매출장)를 보면 비금속광물제품, 건축자재 제조업(질석판재)을 영위하였으며, 질석판재를 주된 제품으로 생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공장에는 질석판재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점, 원고가 추가한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에 대한 매출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3. 5.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13,28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000원, 지방교육세 1,32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17,310원을 환급하였다.

**3)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1. 처분의 경위'와 '2. 다. 2)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같은 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공장 설립 및 운영이 다소 늦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은 2014. 11. 21.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9. [redacted]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점, ② 원고는 그 사이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2014. 1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③ [redacted]도지사는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난 후인 2015. 2. 16. 원고에게 그 이의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한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redacted]도지사의 인용 결정이 있은 날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후인 2015. 6. 19. 비로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15. 12. 2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주식회사 [redacted]인[redacted]에게 매도한 날인 2017. 9. 28.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잘못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redacted]도지사에 의하여 시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3개월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원고가 [redacted]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4개월 이상이나 지나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뒤늦게 착공한 점, 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직접적으로 원고의 사업에 어떠한 경영상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뒤늦게 착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사유가 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당초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박상한

판사 김웅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별지

##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